쉽게 이해하는 약관 요약서

•	가입자 유의사항 : 사고 발생시 보상처리 절차	2
•	자동차보험의 구성	
•	자주하는 질문 (Q&A)	7
•	보험용어 해설	, ç

가입자 유의사항: 사고 발생시 보상처리 절차

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차량 정지

- 사고가 나면 최단거리에서 정지후 사고를 확인



부상자 구호조치

- 사고당사자의 부상 상태를 확인
- 부상이 심할 경우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후송



현장증거 확보

- 사고 구역을 도로에 표시 (차량용 스프레이 등)
- 사고현장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고 목격자를 확보
- 정황증거를 확보한 이후에는 안전한 장소로 차량을 이동



사고 신고

- 사고통보가 늦은 것이 손해로 확대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교통사고 처리 상식

- 1. 사고원인 제공자나 주의 의무가 많은 차가 가해자가 됩니다.
- 2. 충격을 가한 차가 항상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3. 물적피해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 되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 ① 신호지시 위반 ② 중앙선 침범 위반 ③ 제한속도 20Km 이상 초과 ④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⑤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⑦ 무면허운전 ⑧ 음주운전 위반 ⑨ 보도침범/보 도횡단 방법 위반 ⑩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⑪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의 무 위반 ⑫ 화물고정 조치위반
- 4. 아파트 단지 내 등의 중앙선 침범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공항, 학교 구내도로 등 사유 시설물은 교통법령에 의한 교통표시 위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5. 다중 추돌사고의 가해자 분류 방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연달아 계속 추돌하는 경우와 맨 뒤차가 한 번에 추돌하는 경우로 구분되며 앞차 운전자의 충격회수를 물어 최종 판단합니다.
- 6. 주생활 지역이 아닌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처리는 현장에서 즉시 하시고, 자동차 수리는 가능한 집 근처에서 하십시오.
- 7. 잘못이 많은 상대방이 오히려 큰소리 칠 때는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보험처리로 대용하십시오.
- 8. 심야에 한적한 곳에서의 사고나 여성운전자 사고 시에는 주변상황이 안전한지 여부 판단 후 자동차에서 내리십시오. 상황에 따라 차문을 잠근 채 유리만 내려 대화를 하셔도 됩니다.
- 9. 서로 보험처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운전자 면허증 직접 확인, 현장에서 보험접수 하도록 유도하십시오. 사고 현장에서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로 옳고 그름을 임의로 판단해서는 당사자 간에 갈등과 감정의 골만 깊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보험회사에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처리 과정 안내

Step 1	사고접수	·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상황 및 피해정도
1		· 운전자 성명·주소 등 접수 · 사고접수방법 : 콜센터(1566-3000)
Step 2	보험계약사항 확인 및 사고처리 안내	· 보험가입 차량 여부 확인 · 이후 사고처리 절차 안내
1		
Step 3	사고조사 및 치료비 (수리비) 지불보증	· 보상책임 유무 결정 · 병원·정비공장에 치료비(수리비) 지불보증
1		
Step 4	보험금 산정 및 지급 합의	
1		
Step 5	보험금 결정·지급	· 하나손해보험에서는 고객님의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합의 절충 중재 또는 소송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1		
Step 6	보험금 지급내역 및 향후 보험계약 갱신시 변동사 항 안내	· 보상책임 유무 결정 · 병원·정비공장에 치료비(수리비) 지불보증

- ♦ 사고접수시 구비서류
 - 1. 보험금 지급청구서(당사 소정양식)
 - 2. 운전면허즁 사본
 - 3. 차량등록증 사본
 -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한정특약 등 가입시 운전자와 기명 피보험자가 다를 때)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으로, 구체적인 보상내용 및 자동차보험계약의 성립에서 소멸까지의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은 자동차보험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보험 담보의 구성

자동차보험은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등의 일반사항, 보장종목별 보상하는 내용, 그리고 보험금 지급으로 이루어진 보통약관*과 운전 가능 범위를 제한하거나, 보장내용 및 서비스내용을 보충·변경·제한 또는 추가하는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약관

자동차를 소유·사용· 관리하는 동안의 사 고에 대해 구체적인 보상내용 및 보험계 약의 성립에서 소멸 까지의 보험계약자 와 보험회사간의 권 리와 의무사항을 정 한 내용

특별약관

자동차보험 가입 시 선택해서 가입함으 로써 보통약관에서 보장하는 내용에 추 가로 보상 또는 비용,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내용

배상책임	상해	재물
대인배상대물배상대인배상 I	■자기신체손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무보험 자동차에	■타인차량 복구비용
지원금 특별약관	의한 상해	

운전자가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상품	가입대상	가입가능 차종
원데이	차량 미소유자	자가용 승용/화물/ 승합/장기렌터카
원데이 렌터카	렌터카 이용자	대여승용/대여승합
원데이 취급사원	취급업자	자가용 승용/화물/ 승합

보장종목(담보종)별 보상내용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자동차 사고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배상책임담보)

대인배상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으로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

대물배상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자기신체사고

(or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상해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함

후유장애등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후유장애의 구분과 보험금 등을 정한 등급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사망: 보험증권에 기재된 한도
후유장애: 후유장애등급**별 한도
부상: 부상급별 한도내 지급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의 보장 확대

사망: 한도내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지급
후유장애: 한도내 위자료, 상실수익액 지급
부상: 실제치료비, 위자료, 휴업 손해, 기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타인차량 복구비용

자기부담금

일정금액에 대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 타인차량복구 사고로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 가액 한도로 사고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하여 보상해 드립니다. (타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만 보상하며, 벽·가드레일과 충돌 하는 등의 단독 사고시 보상 불가)

- 원데이자동차: 최고 3천만원(자기부담금*:50만원)
- 원데이렌터카: 최고 1천만원(자기부담금:50만원)

자주하는 질문 (Q&A)

Q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황하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든 하나손해보험 콜센터(1566-3000)로 전화하시면 정성껏 도와 드립니다.

Q 대물배상의 대차료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대차를 하는 경우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 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 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해 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 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의 대 여자동차 중 최저 통상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일람표 범위에서 실임차료를 지급합니다. 단, 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 및 대형 이륜자동 차(260cc초과)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중 최저 통상요금 한도로 대차 가능합니 다.

피해차량이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대차료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Q 대물배상의 지급기준의 '동급'과 동일한 '규모' 대여자동차의 차이는 무엇인가 요?

'동급'의 대여자동차는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의미하며, '규모'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자동차의 종별구분)의 규모별 세부기준(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를 말합니다.

Q 대물배상의 지급기준의 대차료 인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피해차량이 수리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때까지의 기간이며, 한도는 25일(실제 정비작업기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까지입니다. 단,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피해차량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10일을 한도로 합니다.

Q 차량가액(차량시세)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온 경우에도 수리비가 보상되나 요?

타인차량 복구비용에서는 사고 직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소요되는 수리비만 지급합니다. 또한, 보험사는 보험중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수리비에서 공제합니다. 차량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등(전부손해발생시)에는 사고발생 당시 차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물배상에서는 실제수리하는 경우 사고발생 당시 차량가액(차량시세)의 120% 한도내에서 수리비(열처리도장료 포함)를 지급합니다. 다만, 내용연수초과 차량, 영업용 차량은 130%를 한도로 합니다.

Q 자기부담금이란 무엇인가요?

타인차량 사고수리시 손해액 (수리비 등)의 정액(50만원)을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수리비 등의 누수를 방지하여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등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시) 과실비율 50%, 자차수리비 200만원, 대물수리비 400만원

보장종목	수리비	과실비율 적용수리비	자기부담금
타인차량 복구비용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대물배상	400만원	200만원	해당없음

주) 자기부담금제는 타인차량 복구비용에만 적용되며 대물배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가 정비업체에 직접 납부하셔야 하며 보험사는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정비업체에 지급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실제 확정 된 자기 부담금을 초과하여 부담한 경우 차액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해 드립니다.

용어해설

가족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 특정의 사안(예: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전쟁, 지진, 태풍 등에 의한 사고로 며책 인한 소해) 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의무를 면하는 것 자동차보험의 주요 담보에 대한 보장내용과 보험계약의 성립부터 보통약관 소멸까지의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등을 정한 내용 보험기입금액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액(보상 한도액)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약관상 보상액 보험금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자가 납입하는 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의 구분과 보험금 등을 상해등급 정한 등급 12대 중과실 ①신호·지시위반사고. ②중앙선 침범사고. ③속도위반사고. ④추월방법 사고 위반사고. ⑤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⑥횡단보고사고. ⑦무면허사고. (교통사고처리 ®주취/약물복용사고, ⑨인도침범사고, ⑩개문발차사고, ⑪어린이보호구역 특례법 제3조 안전운전 의무 위반사고. ①화물고정 의무위반사고 제2항) 보험금 지급 시. 일정금액에 대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 자기부담금 자동차소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정부에서 가해자 불명(뺑소니) 자동차 또는 정부보장시업 무보험자동차로 인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 후유장애 등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후유장애의 구분과 보험금 등을 정한 등급

목 차

원데이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제1조(용어의 정의)	14
제2조(자동차보험의 구성)	18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20
제1절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	20
제3조(보상하는 손해)	20
제4조(피보험자)	20
제5조(피보험자동차의 범위)	20
제6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20
제2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22
제7조(피보험자 개별적용)	22
제8조(지급준비금의 계산)	22
제9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23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24
제1절 자기신체사고	24
제10조(보상하는 손해)	24
제11조(피보험자)	25
제12조(피보험자동차의 범위)	25
제1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25
제14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26
제15조(지급보험금의 계산)	26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28

제16조(보상하는 손해)	28
제17조(피보험자)	28
제18조(피보험자동차의 범위)	28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28
제2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29
제3절 타인차량 복구비용	31
제21조(보상하는 손해)	31
제22조(피보험자)	31
제23조(피보험자동차의 범위)	32
제2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32
제25조(지급보험금의 계산)	33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36
제26조(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36
제27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36
제28조(제출 서류)	37
제29조(가지급금의 지급)	38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39
제30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39
제31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39
제32조(제출 서류)	40
제33조(가지급금의 지급)	40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41
제34조(보험금의 분담)	41
제35조(보험회사의 대위)	42
제36조(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43
제37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43
제38조(뀽탁금의 대출)	43

제4편 일반사항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45
제39조(보험계약의 성립)	45
제40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45
제41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46
제42조(보험기간)	47
제43조(사고발생지역)	47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47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47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47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48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49
제47조(보험계약의 취소)	49
제48조(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49
제49조(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	49
제49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49
제50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50
제51조(보험료의 환급 등)	51
제4장 그 밖의 사항	52
제52조(약관의 해석)	52
제53조(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52
제54조(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53
제55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듕의 지급보장)	53
제56조(보험사기행위 금지)	53
제57조(분쟁의 조정)	54
제58조(관할법원)	54
제59조(준용규정)	54

원데이 자동차보험 별표 및 붙임

<별표1>대인배상,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55
<별표2>대물배상 지급 기준	66
<별표3>자기신체사고 지급 기준	70
<별표4>과실상계 등	71
<별표5>동슝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72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73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84

원데이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제1장 대인배상 l 지원금 특별약관	93
제2장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	94
제3장 법률비용지원 특별약관	96
제4장 신용카드이용 보험료 납입 특별약관	100
제5장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100
※ 관련법규	104

특별약관 색인 목차

구분	특약명	페이지
٦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	94
_	대인배상ㅣ지원금 특별약관	93
Н	법률비용지원 특별약관	96
Ţ	신용카드 이용 보험료 납입 특별약관	100
天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100

원데이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제1조(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가지급금: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용의 일부를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2. 단기요율: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말합니다.

[용어풀이]

'보험요율'이라 함은 보험료 계산 시 가입조건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료 수준 등을 말합니다.

- 3. 마약 또는 약물 등: 「도로교통법」제45조^(관련법규*1)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 성의약품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4. 무면허운전(조종): 「도로교통법」(관련법규*1) 또는 「건설기계관리법」(관련법규*5)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거나 운전(조종)이 금지된 상황에서 운전(조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5. 무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관련법규*3)}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관련법규*5)}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관련법규*25)}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관련법규*1)}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농업기계화촉진법」(^{관련법규*2)}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제외합니다.
 - 가. 자동차보험「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 나. 자동차보험「대인배상॥」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 다.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이고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

- 인배상 II 」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 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는 그 각각의 자동차
- 라.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자동차(「도로교통법」 (관련법규*1)에 의한 개인형이동장치는 제외)

[유어풀이]

- ① 대인배상 II 나 공제계약 없이 대인배상 I 만 가입한 자동차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서는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합니다.
- ② '공제계약'이라 함은 공제조합이 각각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출자금을 자본으로 조합원의 자동차사고 시에 공제금을 지급하여 돕는 "공제사업"에 의한 계약을 말합니다.
- 6.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 가. 부분품: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원형 그 대로 부착되어 자동차의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를 말합니다.
 - 나. 부속품: 자동차에 정착 또는 장비되어 있는 물품을 말하며, 자동차 실내에서 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자동차에 고정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을 제외합니다.
 - (1)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
 - (2) 법령에 의해, 자동차에 정착하거나 장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물건
 - (3) 통상 장식품으로 보는 물건
 - (4) 부속기계장치
 - 다. 부속기계장치: 의료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방송중계차 등 자동차등록 증상 그 용도가 특정한 자동차에 정착되거나 장비되어 있는 정밀기계장치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 ①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 ② **장비**: 자동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또는 법령에 따라 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 ③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지급을 위해 고속도로 요금소와 통행료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 송수신장치(예:하이패스 단말기)
- ④ **'법령'**은「자동차관리법」 (관련법규*3) 제3장 제29조입니다.
- ⑤ '금지되어 있는 물건'이라 함은 자동차운행에 있어 본인 및 다른 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기준밝기를 초과한 램프, 번호판 가림장치 등)

관련법규 *1) *3) → p100 자동차보험 약관관련 법규 참조

- 7. **운전**(조종): 「도로교통법」상 도로{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 항·제148조(벌칙) 및 제148조의2(벌칙)^(관련법규*1)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에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8. **운행**: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 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조 제2호)(관련법규*4)

[용어풀이]

'운전'과 '운행'의 차이 : '운전'이라 함은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운행'이라 함은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은 「도로교통법」의 '운전'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서울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에 도착 후 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운전'이란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량을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을 말하고, '운행'이란 운전 종료 후 주차가 된 상황 및 이후 관리 상태까지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 9. 음주운전(조종): 「도로교통법」 (관련법규*1)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조종) 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10.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관련법규*4)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 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 11. 자동차보유자: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조 제 3호)(관련법규*4)
- 12. 자동차 취급업자: 자동차정비업,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 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이들의 피용 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를 말합니다.
- 13. 피보험자: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 14. 피보험자동차: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 15.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 가. 피보험자의 부모: 피보험자의 부모, 양부모를 말합니다.

- 나. 피보험자의 배우자: **법률상의**(관련법규*17)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 다. 피보험자의 자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유어풀이]

- ① '법률상의 배우자'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관련법규*28)의 규정에 따른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 ②'사실혼'이란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실제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며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단순 동거와는 구별됩니다. (중혼적 사실혼 제외)
- 16. 휴대품, 인명보호장구 및 소지품
 - 가. 휴대품: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합니다.
 - 나. **인명보호장구**: 외부충격으로부터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하는 특수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관련법규*1)에서 정하는 승차용 안전모 또는 전용의류를 말합니다.
 - 다. **소지품**: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

[용어풀이]

- ① 인명보호장구: 바이크 전용 슈트, 에어백 등 (라이더자켓·팬츠·부츠 등 이와 유사한 일반의류는 제외)
- ②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 ③ 소지품의 예)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등),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
- 17.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관련법규*1)에서 정한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18. 보험가액
 - 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 나. 보험계약 체결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

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19. 마약,약물운전: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2조(자동차보험의 구성)

- ①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원데이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타인차량 복구비용의 5가지 보장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② 각 보장종목별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1. 배상책임: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가. 「대인배상」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자동차손 해배상책임보험(이하 대인배상 I 이라 하며, 책임공제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으로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
다. 「대물배상」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다른 사 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2.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 상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가.「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발생한 타인차량의 사 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다. 「타인차량복구비용」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다른자동차와 충돌 또 는 접촉으로 인한 사고로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에 보상

③ **타인차량**을 그 소유자로부터 운전을 허락받아 운전하는 자에 한하여 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가능합니다.

[용어풀이]

- 이 보험에서 **타인차량**이라 함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지정된 1대의 자동 차를 말합니다.
- ① 자가용 승용자동차(10인승 이하), 자가용 승합자동차(16인승 이하), 자가용 화물자동차(1톤 이하) 및 영업용 장기렌터카(1년 이상 대여한 경우)
- ② 운전자 본인 소유가 아닌 자동차(리스차량은 리스이용자가 소유한 자동차로 간주하고, 장기렌터카는 임차인이 소유한 자동차로 간주합니다)
- ③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관련법규*4)에서 정한 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
- ④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2^(관련법규*11)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의3^(관련법규*10) 에서 정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 ④ 자동차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자동차보험요율' 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구 분	내 용
기본보험료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특약보험료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특약 등에 적용하는 보험료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제1절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

제3조(보상하는 손해)

- ①「대인배상」에서 보험회사는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 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②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4조(피보험자)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5조(피보험자동차의 범위)

「대인배상」과「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동차는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 소유자로 부터 운전을 허락받은 타인차량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지정된 1대 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 1. 자가용 승용자동차(10인승 이하), 자가용 승합자동차(16인승 이하), 자가용 화물자동차(1톤 이하) 및 영업용 장기렌터카(1년 이상 대여한 경우)
- 운전자 본인 소유가 아닌 자동차(리스차량은 리스이용자가 소유한 자동차로 간 주하고, 장기렌터카는 임차인이 소유한 자동차로 간주합니다)
-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관련법규*4)에서 정한 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
- 4.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관련법규*11) 또는「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의3^(관련법규*10)에서 정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6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2.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 6.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 7.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들어난 손해
- 8.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9.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운전을 허락받지 않은 경우 또는 장기렌터카의 임차인으로부터 운전을 허락받지 않은 경우
- 10. 피보험자동차가 기명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리스차량은 리스이용자가 소유한 자동차로 간주하고, 장기렌터카는 임차인이 소유한 자동차로 간주합니다)에 해당되는 경우
-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에서 보 상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2. 피보험자동차의 보유자 (제1조(용어정의)제11호)
 - 3.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법규*18)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 4.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관련법규*18)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 해
 - 2. 피보험자동차의 보유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 3.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 4.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 5.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할 인명보호장구에 한하

관련법규 *18) → p100 자동차보험 약관관련 법규 참조

- 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 6.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 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 ④ 제1항 제2호와 관련해서 보험회사가 제7조(피보험자 개별적용)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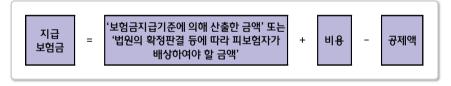
제2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제7조(피보험자 개별적용)

- ① 이 장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제6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1호, 제6호, 제8호를 제외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8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정하는 보험금의 한도가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제8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대인배상」,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②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1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의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 출한 필요한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 3. 그 밖에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용어풀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약관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에 따르는 그 권리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한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이라 합니다.

<예시> 사고 증거(블랙박스 영상 등)의 확보, 소송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

- ④ 제1항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 1. 「대인배상」: 대인배상 I 에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 I 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배상 I 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 2. 「대물배상」: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모터, 구동용 배터리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

[유어풀이]

- ①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은 보험가입금액(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비용'은 보험가입금액(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②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라 함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을 말합니다.

제9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 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 또는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1. 「대인배상」: 1 사고당 1억원
 - 2. 「대물배상」
 -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제2항(^{관련법규*4)}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 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보험가입금액 이하 손해 : 지급보험금
 -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제2항^(관련법규*4)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

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초과 손해 : 1사고당 5.000만원

- ②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위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의무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에 대한 지급책임을 지는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대한 동 사고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제1절 자기신체사고

【자기신체사고】

'자기신체사고'는 이 보험계약에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 나. 화재 또는 폭발
 -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용어풀이]

'상해'라 함은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11조(피보험자)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기명피보험자
- 2. 제1호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제1조(용어정의) 제15호)
- 3. 피보험자동차의 보유자 (제1조(용어정 의) 제11호)

제12조(피보험자동차의 범위)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동차는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운전을 허락받은 타인차량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지정된 1대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 1. 자가용 승용자동차(10인승 이하), 자가용 승합자동차(16인승 이하), 자가용 화물자동차(1톤 이하) 및 영업용 장기렌터카(1년 이상 대여한 경우)
- 2. 운전자 본인 소유가 아닌 자동차(리스차량은 리스이용자가 소유한 자동차로 간주하고, 장기렌터카는 임차인이 소유한 자동차로 간주합니다)
-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관련법규*4)에서 정한 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
- 4. 「법인세법시행령」제50조의2^(관련법규*11) 또는 「소득세법시행령」제78조의3^(관련법 규*10)에서 정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1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 3.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 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 5.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 7.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

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 8.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운전을 허락받지 않은 경우 또는 장기렌터카의 임차인으로부터 운전을 허락받지 않은 경우
- 9. 피보험자동차가 기명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리스차량은 리스이용자가 소유한 자동차로 간주하고, 장기렌터카는 임차인이 소유한 자동차로 간주합니다)에 해당되는 경우

제14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사망: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2. 부상: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별표 3>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상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3. 후유장애: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때에는 '<별표 3>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5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자기신체사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사망, 부상, 후유장애의 지급보험금 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다만**,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가. '실제손해액'은 '<별표 1> 대인배상,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및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 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 나.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 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다.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 (1)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 I」(**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 배상 II」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해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단,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 (3)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 라. 다만,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 경우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 후유장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 2.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 ①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 지급 방식은 2가지로 나뉩니다.
 - 1. '공제액'이 발생하는 경우('공제액'이 있는) 경우 : 보험금 지급기준 등에 따라 실제손해액으로 산정하여 한도 내 지급
 - 2.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공제액'이 없는) 경우: 사망/부상/후유장애에 대해 약 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금액을 한도 내 지급(실제손해액 아님)
 - <예시>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공제액'이 없는) 경우는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 지출된 금액인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공 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지급보 험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② '정부보장사업'(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이라 함은 뺑소니 또는 무보험사고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응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관련법규*4)상 책임보험과 동일한 한도액까지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③ '**과실상계**'란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의 공평분담을 위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16조(보상하는 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에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상해**를 입은 때에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 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 ① 무보험자동차: 제1조(용어정의) 제5호
- ② '상해'라 함은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③ '배상의무자'라 함은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17조(피보험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제18조(피보험자동차의 범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피보험자동차는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운전을 허락받은 타인차량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지정된 1대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 1. 자가용 승용자동차(10인승 이하), 자가용 승합자동차(16인승 이하), 자가용 화물자동차(1톤 이하) 및 영업용 장기렌터카(1년 이상 대여한 경우)
- 2. 운전자 본인 소유가 아닌 자동차(리스차량은 리스이용자가 소유한 자동차로 간 주하고, 장기렌터카는 임차인이 소유한 자동차로 간주합니다)
-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관련법규*4)에서 정한 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
- 4. 「법인세법시행령」제50조의2^(관련법규*11) 또는 「소득세법시행령」제78조의3^(관련법 규*10)에서 정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2.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보

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 3.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 5.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 7.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 8.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 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9.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10.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 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 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
- 11.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운전을 허락 받지 않은 경우 또는 장기렌터카의 임차인으로부터 운전을 허락받지 않은 경우
- 12. 피보험자동차가 기명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리스차량은 리스이용자가 소유한 자동차로 간주하고, 장기렌터카는 임차인이 소유한 자동차로 간주합니다)에 해당되는 경우

[용어풀이]

'배상의무자'라 함은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2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관련법규*1)에 의한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손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관련법규*4)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2. 위 '지급보험금'은 피보험자 1인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3.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 하여 드립니다.
 -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4. 위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 가. 대인배상 I (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 나.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 II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 액
 - 다. 피보험자가 탑승중이었던 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 II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 라.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 마.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 액

[유어풀이]

- ① 책임공제'라 함은 사업용 자동차의 보유자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건설기계관리법」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제사업자"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한다.
- ② '공제계약'라 함은 공제조합이 각자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출자금을 자본으로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 시에 공제금을 지급하여 돕는 '공제사업'과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 <예시> 개인택시의 경우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과 체결된 공제계약
- ③ '배상의무자'라 함은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3절 타인차량 복구비용

제21조(보상하는 손해)

- ① 「타인차량 복구비용」에서 보험회사는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2.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 3. 피보험자동차의 일방 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 4. **경미한 손상**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 하거나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② 위 1항의 보상하는 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타차**와의 충돌, 접촉으로 인한 손해. 단, 타차의 차량등록번호와 운전자(또는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용어풀이]

- ① '경미한 손상'이라 함은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말합니다.
 - <예시>외장부품의 코팅, 색상 등이 손상되었으나 도색 또는 판금만으로 복원이 가능한 경우 등
- ② '품질인중부품'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항 ^(관련법규*3)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말합니다.
- ③ '타차'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자동차의 등록번호(차량번호 또 는 차대번호를 말합니다)와 운전자 또는 소유자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 ④ '③'의 자동차라 함은「자동차관리법」^(관련법규*3)에 의한 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 (^{관련법규*5)}에의한 건설기계,「군수품관리법」(^{관련법규*25)}에 의한 차량,「도로교통법」 (^{관련법규*1)}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농업기계화촉진법」^(관련법규*2)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 중인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제22조(피보험자)

「타인차량복구비용」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23조(피보험자동차의 범위)

「타인차량 복구비용」에서 피보험자동차는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운전을 허락받은 타인차량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지정된 1대의 자 동차를 말합니다.

- 1. 자가용 승용자동차(10인승 이하), 자가용 승합자동차(16인승 이하), 자가용 화물자동차(1톤 이하) 및 영업용 장기렌터카(1년 이상 대여한 경우)
- 2. 운전자 본인 소유가 아닌 자동차(리스차량은 리스이용자가 소유한 자동차로 간주하고, 장기렌터카는 임차인이 소유한 자동차로 간주합니다)
- 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관련법규*4)에서 정한 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
- 4. 「법인세법시행령」제50조의2^(관련법규*11) 또는 「소득세법시행령」제78조의3^(관련법 규*10)에서 정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2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타인차량 복구비용」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 3.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 5.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 6.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 7.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 합니다.
- 8.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용어풀이]

'마멸'이라 함은 갈려서 닳아 없어짐을 의미합니다.

- 9. 피보험자동차의 도난(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 장치만의 도난을 포함합니다)으로 인한 손해
- 10.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 11.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 12.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 13.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
 - 가.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 단, 타인자동차의 차량등록 번호와 운전자 또는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 14. 기명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소해
- 15.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운전을 허락 받지 않은 경우 또는 장기렌터카의 임차인으로부터 운전을 허락받지 않은 경우
- 16. 피보험자동차가 기명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리스차량은 리스이용자가 소유한 자동차로 간주하고, 장기렌터카는 임차인이 소유한 자동차로 간주합니다)에 해당되는 경우

제25조(지급보험금의 계산)

「타인차량 복구비용」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2. 위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 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나.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 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 다.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 라.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

- 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 3.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 하여 드립니다.
 -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4. 위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가 생긴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 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 5. 대물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사고 시 사고 당사자 간 과실이 모두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대물배상」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타인차량 복구비용」 담보로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인차량 복구비용」 담보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가 확정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타인차량 복구비용」보험금을 먼저 지급하여 드리며,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피보험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게 이 금액을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타인차량 복구비용」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지급한 보험금 범위에서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상대방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회사가구상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 피보험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6. 「타인차량 복구비용」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금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이미 부담한 자기부담금과 실제 손해액에서 당해 구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전제로 산정된 자기부담금과의 차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최소 자기부담금 이상으로 합니다.)
- 7.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8. 보험회사가 보상한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타인차량 복구비용의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 시에 종료합니다.
- 9.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 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 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 ① '중요한 부분'이라 함은 엔진, 미션, 캐빈, 적재함, 바디 및 전기자동차의 모터, 감속기, 구동용 배터리 등 중요한 부분품을 말합니다.
- ② **'감가상각**'이라 함은 엔진, 변속기 등 자동차의 부분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한 만큼 하락된 가치감소분을 말합니다.
- ③ '전부손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제26조(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장종목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1. 「대인배상」, 「대물배상」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2.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 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에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4. 「타인차량 복구비용」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에 다른 자동차와 충 돌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가 훼손되었을 때

제27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 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②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1항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보험금이 있는 경우 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다 만,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 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유어풀이]

- ① '정당한 사유'라 함은 추가적인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 또는 손해 배상금 청구권자가 보험회사로 제출해야할 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의 누락으로 보험사고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등을 말합니다.
- ②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예시>

원금: 100원 / 이자율: 연10%

- 1년 후: 100원 + (100원 × 10%) = 110원 - 2년 후: 110원 + (110원 × 10%) = 121원

- ③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경합할 때에는 보험 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⑥ 「대인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피해자 또는 손해배 상청구권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그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 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제28조(제출 서류)

피보험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듕	대인배 상	대물 배상	타인 차량 복구 비용	자기 신체사 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1. 보험금 청구서	0	0	0	0	0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0	0	0	0	0
3.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0	0			
4.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의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등			0		0
5.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0
6.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 또는 공제 계약의 유무 및 내용					0
7.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 배상॥」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 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 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0
8.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전손사고 후 이전매각 시 이전서류		0	0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듕	대인배 상	대물 배상	타인 차량 복구 비용	자기 신체사 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전손사고 후 폐차시 폐차인수증명서		0	0		
9.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0	0	0	0	0

제29조(가지급금의 지급)

- ①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 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 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⑤ 보험회사는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⑥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⑦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28 조(제출 서류)에서 정하는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제30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가지는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 등의 주장(또는 항변)사항과 동일하게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31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①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하여야 하며, 만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은 경우'란 아무런 근거 없이 사고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손해액 입증 자료 등의 요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의 불리함을 이유로 블랙박스 영상 등 과실비율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 ②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손 해배상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⑤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4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⑥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

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⑦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금을 일정기간으로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정기금의 지급기일의 다음날 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 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정기금'이라 함은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치르거나 받는 돈을 말합니다.

제32조(제출 서류)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회사에 손해배 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필요 서류 등	대인배상	대물배상
1.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0	0
2. 손해배상청구서	0	0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0	0
4.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O	0

제33조(가지급금의 지급)

- ①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관련법규*4)}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관련법규*27)} 등에 의해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 의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관련법규 *4) *27) → p100 자동차보험 약관관련 법규 참조

-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 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 구권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⑤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관련법규*4) 등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⑥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⑦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 하게 제32조(제출 서류)에 정한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제34조(보험금의 분담)

「대인배상」,「대물배상」,「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타인차량 복구비용」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분담합니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있는 경우: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보험회사에 가입된 자동차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손해액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한계액

<예시>

중복보험계약

A보험사 100만원, B보험사 100만원을 가입하여, 실제 손해액이 100만원이 나왔을 때, A보험사 100만원과 B보험사 100만원인 총200만원이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 비례보상에 의해 A보험사 50만원과 B보험사 50만원 총100만원의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2. 제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35조(보험회사의 대위)

- 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취득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다음의 권리는 취득하지 않습니다.
 - 1.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보험금을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에 의해 지급할 때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 2. 「타인차량 복구비용」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따라 사용하거 나 관리하던 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 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또는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 나.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동안에 사고를 낸 경우
 - 3. 피보험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하여 갖는 권리. 다만, 손해가 그 가족 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 ③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어풀이]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 그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말합니다. 즉, 손해가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 피보험자에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대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36조(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①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②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용어풀이]

- ① '곤궁'이라 함은 처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난처하고 딱한 상황을 말합니다.
- ② '경솔'이라 함은 말이나 행동이 조심성 없이 가벼운 상태를 말합니다.

제37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절차를 대행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 같음)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때

제38조(공탁금의 대출)

보험회사가 제37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 금을 피보험자에게 대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출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정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의 회수청구권을 보험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 ① '가압류'라 함은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액의 한도내에서 압류한 뒤 채권자가 강제집 행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환가(매매, 양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 처분을 말합니다.
- ② '가집행'이라 함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법원의 직원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강제 집행을 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③ '공탁금'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금전·유가증권·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는 금액을 말합니다. 공탁을 하는 경우로는 채무를 갚으려고 하나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혹은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제4편 일반사항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제39조(보험계약의 성립)

- ① 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합니다.
- ②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보험료 전액을 지급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지체 없이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③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회사는 제42조(보험기간)의 규정에 따라 보험기간의 첫 날부터 보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 전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승낙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합니다.

제40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② 통신판매 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1.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사이버몰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는 약관을 드리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2.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③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 1. 서면교부

-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④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 1.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 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지 않은 경우
 - 2.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 시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 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3.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 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 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 제한사유 등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보험회사의 별도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약관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 ② '통신판매 보험계약'이라 함은 보험회사가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 ③ **자필서명**에는 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제2조 제2호^(관련법규*6)의 규정에 의한 방식을 포함합니다.

제41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설명서, 약관, 청약서 부본 및 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보험모집과정에서 제작·사용한 보험안내자료(서류·사진·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를 포함)의 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2조(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날의 동일시점까지입니다. 다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개시시간부터 마지막날종료시간까지 입니다.

제43조(사고발생지역)

보험회사는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장종목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 ①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제2호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1.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 2.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②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50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보험회사는 제1항의 각 호의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0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 2.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 3.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 실
-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③ 보험회사는 제1항의 각 호의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지체 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에서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2.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출·퇴근 시 승용차 함께 타기 등) 및 손해의 정도
 - 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사고에 대한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라.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 3.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는 보험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4.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5.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 6. 보험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사고에 관해 조 사하는 데 협력하여야 합니다.

[용어풀이]

- ① '공동불법행위'라 함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② '연대채무자'라 함은 위 공동불법행위를 통해 동일한 손해배상 책임을 가지는 여러

사람을 의미합니다.

- ③ '상호간의 구상권'이라 함은 만약 연대채무자 중 한사람이 채무를 100% 이행한 경우에, 대신하여 변제한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제47조(보험계약의 취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을 증명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비고]

제47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취소된 경우, 제51조(보험료의 환급 등) 제3항이 적용됩니다.

제48조(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제49조(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해지'라 함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회사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49조의 2(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관련법규*19)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 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자 동차손해배상 보장법」^(관련법규*4)에 따른 책임보험에 대해 해지 요구를 할 때에는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51조(보험료의 환급) 제3 항 제1호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일과 상관없이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50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 ①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의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 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 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 가.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 나.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청약서의 기재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하였을 때
 - 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날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6개월이 경과한 때
 - 라.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이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 관련이 없을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지 않은 때

[용어풀이]

'중대한 과실'이란 주의의무위반이 현저한 과실, 즉 극히 근소한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부주의로 이를 예견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과실과 의 구별은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정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

- 게 알린 경우. 다만,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험을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 3. 보험회사가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항,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 항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료 를 내지 않은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 가. 보험회사가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이 지난 경우
 - 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하는 사실을 통지받은 후 1월이 지난 경우
- 4. 보험금의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가 발생한 경우.

'법정대리인'이란 위임을 받지 않고도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자(친권자, 후견인)를 말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의 가입내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51조(보험료의 환급 등)

- ①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전 보험료와 변경 후 보험료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 ②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보험료가 적정하지 않게 산정되어 보험계약자가 적정 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계약자가 반 환을 청구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 (납입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 에게 고의·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적정보험료를 초과한 금액만 돌려드립니다.
-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 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제40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제4항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 상실되거나 해지(제49조의2(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른 위법계약 해지를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계산한 보험료
-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 3. 보험계약이 해지(제49조의2(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른 위법계약 해지를 포함 한다)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 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 ④ 제3항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 2. 보험회사가 제47조(보험계약의 취소) 또는 제50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 ⑤ 이 약관에 의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드리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에 드립니다.
- ⑥ 보험회사가 제5항의 반환기일이 지난 후 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다만, 이 약관에서 이자의 계산에 관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52조(약관의 해석)

- ① 보험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보험계 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 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53조(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① 보험회사는 제28조(제출서류) 제5호. 제6호의 배상의무자의 개인정보와 제46

조(사고발생 시 의무) 제2호 나목, 다목의 피해자, 가해자 및 증인의 개인정보를 보험사고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의한 의무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2조 내지 제24조(^{관련법규*7)},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관련법규*8)}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번호, 형식. 연식
 - 2. 계약일시, 보험종목, 보장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보험료 할인·할 중에 관한 사항, 특별약관의 가입사항, 계약해지 시 그 내용 및 사유
 -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제54조(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제55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 법^(관련법규*9)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56조(보험사기행위 금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 등이 **보험사기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보험사기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령'이란:

- ①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관련법규*26) 제2조제1 호)
- ②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 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햄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업법」제102조의2^(관련법규*29))
- ③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보험업법」제102조의3^{관련법규*29})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사람,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해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사람,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해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제57조(분쟁의 조정)

- ①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그 밖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42조^(관련법규*19)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58조(관할법원)

이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59조(준용규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원데이자동차보험 별표

<별표 1> 대인배상,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별표 1>의 나이(연령)는 만 나이(연령)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 사 망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u> </u>				
항목	지급 기준			
1. 장례비	지급액: 5,000,000원			
2. 위자료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2)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 나.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름.			
3. 상실수익액	기. 산정방법: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 (단, 사망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			
	(월평균현실소득액 - 생활비)×(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 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유어풀이]

- ① '급여소득자'라 함은「소득세법」제20조^(관련법규*10)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함.
- ②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 가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한
- ③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발생 전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 증빙서를 말함.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사업개시자 또는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 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하거나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포함함.

나) **사업소득자**

①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 한 금액

- <산식> -

[연간수입액 - **주요경비** - (연간수입액×**기준경비율**) - 제세공과금]× 노무기여율×투자비율

- (주) 1. 제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위 기준 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그 증명된 경비를 공제함.
 - 2. 소득세법 등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 대신 그 비율을 적용함.
 - 3. 투자비율은 증명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업자수'로 함.
 - 4. 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함.

[유어풀이]

- ① 주요경비: 매입비용(재화의 매입, 가공비용, 운반비 등을 말하며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은 제외) 임차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 자산에 대한 임차료) 인건비(종업원의 급여나 임금 및 퇴직급여)등을 말합니다.
- ② 기준경비율: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사업자의 직전년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 등에 적용하는 경비율을 말합니다.
- ③ **단순경비율**: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사업자의 직전년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 등에 적용하는 경비율을 말합니다.
 - ②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①의 산식에 따르지 않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 ③ 위 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일** 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항목 지급 기준

[용어풀이]

① 이 보험계약에서 '**사업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제19조^(관련법규*10)에서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함.

② 이 보험계약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제15조^(관련법규*12)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제17조^(관련법규*12)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중 공사부문은 보통인부, 제조부문은 단순노무종사원의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산식>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임금)/2 * 월 임금 산출 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

- 다) 그 밖의 유직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 제외) 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 액.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 며, 이 기준에서 정한 여타의 증명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 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제15 조^(관련법규*12)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 앙회)이「통계법」제17조^(관련법규*12)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중명한 경우**에 한함.

[용어풀이]

기술직 종사자가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라 함은 자격증, 노무비 지급확인서 등의 입증 서류를 보험회사로 제출한 것을 말함.

- 2) 현실소득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자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사정한 금액으로 한.
 - 가) 급여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 나)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 다) 그 밖의 유직자 일용근로자 임금
 -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제15

지급 기준

조^(관련법규*12)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 앙회)이「통계법」제17조^(관련법규*12)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

- 3)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19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19세 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
- (2) 가사종사자: 일용근로자 임금
- (3) 무직자(학생 포함): 일용근로자 임금
- (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복무예정자 포함)
 - : 일용근로자 임금
- (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 (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함.
- (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과 증명 곤란한 소득이 있는 때 혹은 증명이 곤란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 이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 (6) 외국인
- (가) 유직자
 - 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증명이 가능한 자: 위 1)의 현실 소득액의 증명이 가능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 ② 위 ① 이외의 자: 일용근로자 임금
- (나)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일용근로자 임금

다. 생활비율: 1/3

라. 취업가뉴웤수

- (1)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 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 가능월수를 산정하며 피해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관련법규*20)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관}련법규*21)에 따른 어업일 경우(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취업가능연한을 7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 (2) 피해자가 사망 당시(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일) 62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에 의하되, 사망일 또는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 을. 그 이후부터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늉월수>

피해자의 나이	취업가늉월수
62세부터 67세 미만 67세부터 76세 미만 76세 이상	36월 24월 12월

항목	지급 기준
	(3) 취업가능연한이 사회통념상 65세 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연한 이후 65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4) 취업시기는 19세로 함.
	(가) 적법한 일시체류자 인 경우 생활 본거지인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적법한 일시체류자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한 경우 아래 (다)를 적용함.
	(나) 적법한 취업활동자 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체류기간 동안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적법한 체류기간 종료 후에는 본국의 소 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사고 당시 남은 적법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고일부터 3년간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 그 밖의 경우 사고일부터 3년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그 후부터는 본국 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 ① '적법한 일시체류자'라 함은 국내 입국허가를 득하였으나 취업활동의 허가를 얻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 ② '적법한 취업활동자'라 함은 국내 취업활동 허가를 얻은 자를 말합니다.

i=5/12%, n=취업가능월수

나. 부 상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 I」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항목	지급 기준							
1. 적극손해	 가. 구조수색비: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 나. 치료관계비: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 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를 경과한 후에도 의학적 소견에 따른 향후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상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함. (1) 입원료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 보다 입원료가 비싼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나) 기준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기열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입원일수가 7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한 기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오)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 (3) 치아보철비: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또는 임플란트(실제 시술한 경우로 1치당 1회에 한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2. 위자료	가. 청구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가. 청구권자의 범위: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단위: 만 원)						
	급별	(22.2)						
	1	200	5	75	9	25	13	15
	2	176	6	50	10	20	14	15
	3	152	7	40	11	20		
	4	128	8	30	12	15		
	다.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 내에서 부상 위자료 를 지급함.							

항목	지급 기준
3. 휴업손해	가. 산정방법: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함.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세법상 관계 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한 경우를 말함.

<산식>

1일 수입감소액×휴업일수× $\frac{85}{100}$

나, 휴업일수의 산정

- (1) 휴업일수의 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함.
- (2) 사고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취업가능연한을 초과한 경우, 휴업일수를 산정하지 아니함. 다만, 위 가.에 따라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3) 취업가능연한: 65세를 기준으로 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며 피해자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관련법규*20)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관련법규*21)에 따른 어업일 경우(피해자가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취업가능연한을 70세로 함.

다. 수입감소액의 산정

- (1) 유직자
- (가)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 감소액을 산정함.
- (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 감소액으로 함.
- (2) 가사종사자
- (가)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

[유어풀이]

'가사종사자'라 함은 사고당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민등록 관계 서류와 세법상 관계서류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증명한 사람을 말함.

- (3) 무직자
-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항목	지급 기준
	(4) 소득이 두가지 이상의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간병비	 가. 청구권자의 범위: 피해자 본인 나. 인정 대상 (1)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중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3) 「의료법」제4조의2^(관련법규*24)에 따른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비용 및 기간에 관계없이 인정하지 않음.

'객관적인 중빙자료'라 함은 진단서, 진료기록, 입원기록,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험회사가 상해등급과 신분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다. 지급 기준

- (1) 위 인정대상 (1)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서 다음 과 같이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 함.
- (2) 위 인정대상 (2)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 60일을 한도로하여 실제 입원 기간을 인정함.
- (3)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함.
- (4) 위 (1)과 (2)의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상해듕급	인정일수
1급~2급	60일
3급~4급	30일
5급	15일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위 1. 내지 3. 외에 그 밖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가.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 끼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나.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다. 후유장애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 I」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항목	지급 기준	
1. 위 자 료	기. 청구권자의 범위: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45,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나)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4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다) 상기 (가), (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약관에 따른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아래 기준을 적용함. ①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②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5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단위: %, 만 원)	
	노동늉력상실률	<u>인정액</u>
	45% 이상 50% 미만 35% 이상 45% 미만 27% 이상 35% 미만 27% 이상 35% 미만 20% 이상 27% 미만 14% 이상 20% 미만 9% 이상 14% 미만 5% 이상 9% 미만 0 초과 5% 미만 다.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후	400 240 200 160 120 100 80 50 F 유장애 위자료를 지급함.
	료로 지급함.	
2. 상실수익액	가. 산정방법: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자식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곱하여 산정함. (단,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취임당하는 호프만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

항목	지급 기준
	<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률×(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 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 당하는 호프만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직전 또는 노동능력 상실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하
	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2) 가사종사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3) 무직자(학생포함)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
	(4) 연역성 중 군 속구에당시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6)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다.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 식 후유장애 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그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라. 노동능력상실기간 사망한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 마. 호프만 계수 사망한 경우와 동일
3. 가정간호비	가. 인정 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 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항목	지급 기준
항목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지는 못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착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수 없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다)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나. 지급 기준
	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항목	지급 기준
1. 수리비용	기. 지급대상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수리비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다만, 경미한 손상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함

[용어풀이]

- ① '경미한 손상'이라 함은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말합니다.
- ② '품질인즁부품'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항(^{관련법규*3)}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말합니다.
 - (2) 열처리 도장료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량연식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 액 (3) 한도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지급함. 다만,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130%를 한도로 함 (가) **내용연수**가 지난 경우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4조 제2항(^{관련법규*22)}에 의한 차량충 당연한을 적용받는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7조 제1항(^{관련법규*23)}에 의한 차량충
 - 당연한을 적용받는 화물자동차

[용어풀이]

'내용연수'라 함은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에서 정하는 내용연수를 말합니다.

항목	지급 기준
	(2)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 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
3. 대 차 료	7. 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 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 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관련법규*22)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여객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 차량과 동일한 규모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함.

- ① '동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합니다. 다만, 배기량, 연식만을 고려할 경우 차량성능을 반영하기 어려운 자동차(예: 하이브리드 차량, 다운사이 장엔진 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크기(길이, 너비, 높이)를 고려합니다.
- ② '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합니다.
- ③ '규모'라 함은「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표1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별 세부기준 (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를 말합니다.
 - (나)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 (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 으로 하며,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 및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의 경 우 중형승용차급 중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 가능

[용어풀이]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0조^(관련법규*22)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차종을 말합니다.

- (2)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 (가)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 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 상당액
-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법구*22)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위(1)-(가) 단서에 따라 대차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대차료의 35% 상당액

항목	지급 기준
	(다)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5% 상당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함.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 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통상의 수리기간'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 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를 말합니다.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10일
4. 京 차 료	 가. 지급대상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가)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관련법규*22)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10일
5. 영업손실	7. 지급대상

항목	지급 기준
	(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 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아니함. (2)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6.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가. 지급대상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7. 견인비용	 가. 지급대상 피해물이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여 이를 정비 가능한 곳까지 운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피해물을 고칠 수 있는 정비공장 등까지 운반하거나 그 곳까지 운반하기 위한 임시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필요 타당한 비용

<별표 3> 자기신체사고 지급 기준

상해/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상해/장애등급	상해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 : 3,000만원)	비고
1급	1,500만원	3,000만원	
2급	800만원	2,700만원	
3급	750만원	2,400만원	
4급	700만원	2,100만원	
5급	500만원	1,800만원	
6급	400만원	1,500만원	
7급	250만원	1,200만원	
8급	180만원	900만원	
9급	140만원	720만원	
10급	120만원	540만원	
11급	120만원	420만원	
12급	120만원	300만원	
13급	80만원	180만원	
14급	50만원	120만원	

주) 1.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2.} 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구분에 의함

<별표 4> 과실상계 등

	- II O	
항목	지급 기준	
1. 과실상계	기.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 Ⅰ」에서 사망보험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 경우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대인배상 Ⅰ」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	
	(3) 「대인배상 II」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 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며, 「대인배상 I」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와 간병비를 보상함. 다만, 차량운전자(*1)가 '자동 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하기 전의 치료관 계비가 「대인배상 I」 한도를 초과할 경우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 후, 그 초과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 (*1) "차량운전자"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제3조 ^(관련법규*3) 에 의한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건설기	
	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를 말하며, 차량운전자에는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적용받는 자를 포함합니다.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2. 손익상계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함.	
3. 동승자에 대한 감액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는 <별표 5>의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 따라 감액함.	
4. 기왕증	가. 기왕증 ^(*1) 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자동차사고 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 (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하여 보상함. 나. 기왕증은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한 비율에 따라 공제함. 다만, 그 판 정에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1) '기왕증'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중상으로 특이체질 및 병적 소인 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별표 5>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1. 기준요소

동승의 유형 및 운행목적	감액비율 ^(*1)
- 동승자의 강요 및 무단 동승,	100%
음주운전자의 차량 동승	40%
동승자의 요청 동승	30%
	20%
 운전자의 권유 동승	10%
 운전자의 강요 동승	0%

(*1) 다만,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타기를 실시한 경우에는 위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수정요소

수정요소	수정비율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 10~20%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제27조 2항, 제31조 5항 관련)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현재 시점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자사 홈페이지(www.hanainsure.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

1.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

- "	Teeta-	·
상해 급별	한도금액	상 해 내 용
1급	3000만원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 (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 술을 시행한 상해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흥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탠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척주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청악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수술을 시행한 상해(근육, 근막 또는 피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적용한다) 화상・좌창・괴사창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해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급	15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3.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또는 경추 골절(치돌기 골절을 포함한다) 또는 탈구로 할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7.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

상해 급별	한도금액	상 해 내 용
		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10. 대퇴 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대퇴골 경부 분쇄 골절, 전자하부 분쇄 골절, 과부 분쇄 골절, 경골 과부 분쇄 골절 또는 경골 원위 관절내 분쇄 골절 12.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하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사지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급	12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안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3.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열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적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4급에 해당한다) 6.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술을 시행한 상해 7.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열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 8.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9. 견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11.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대퇴골 또는 경골 골절(대퇴골 골두 골절은 제외한다) 14.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슬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1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족근관절의 손상으로 족근골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 18.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4급	10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4. 흉부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기관절개술을시행한 경우도 포함한다) 5.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는흉강경 수술도 포함한다)

상해 급별	한도금액	상 해 내 용
		6.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지 않은 상해 7.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2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해당한다) 8. 상완골 경부 골절 9. 상완골 간부 분쇄성 골절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에 해당한다) 11. 요골 원위부 골절과 척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찌 골절을 말한다) 12. 척골 근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아 골절을 말한다) 13.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 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5. 수근골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 16.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7.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18.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8.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2. 하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거골 또는 종골 골절 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5. 사지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5. 사지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6.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5급	9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 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안와 골절에 의한 복시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 4. 안정성 추체 골절 5. 상완 신경총 상부 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6. 상완골 간부 골절 7.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9. 요골 경상돌기 골절

상해 급별	한도금액	상 해 내 용
		10.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11. 수근 주상골 골절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15.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의 견열골절 18.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정당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20. 슬개골 골절 21. 족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22.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그 밖의 족근골 골절(거골 및 종골은 제외한다) 24. 중족족근관절 손상(리스프랑 관절을 말한다) 25.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6개 이상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6급	7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4. 심장 타박 5. 폐좌상(일측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 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7.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견관절의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상해 급별	한도금액	상 해 내 용
		12. 상완골 대결절 견열 골절 13. 상완골 원위부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 해당한다) 14.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요골간부 또는 원위부 관절외 골절 18. 요골 경부 골절 19. 척골 주두부 골절 20.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21. 다발성 수근중수골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 22.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슬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5. 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족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원위 경비골 이개 28.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30.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3~5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1.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7급	500만원	1. 다발성 안면 두개골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2. 복시를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 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5. 쇄골 골절 6. 견갑골 골절(견갑골극,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구돌기를 포함한다) 7.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척골 경상돌기 기저부 골절 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12.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3.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간 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4. 주상골 외 수근골 골절 15. 수근부 주상골・월상골간 인대 파열 16. 수근중수골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17. 다발성 중수골 골절

상해 급별	한도금액	상 해 내 용
		18. 중수수지관절의 골절 및 탈구 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0.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비골 간부 골절 또는 골두 골절 23.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족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6.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지급 8 1	3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2. 상약골, 하악골, 치조골 등의 안면 두개골 골절 3. 외상성 시신경병증 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복합 고막 파열 6.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3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 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횡돌기) 또는 후궁 골절 9.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중수골 골절 13. 수지골의 근위지간 또는 원위지간 골절 탈구 14. 다발성 수지골 골절 15. 무지 중수지관절 측부인대 파열 16.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 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슬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8.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수족지골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사지의 근 또는 건 파열로 1 ~ 2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2. 사지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사지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24. 사지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판술을 시행 한 상해

상해 급별	한도금액	상 해 내 용
на		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9급	240만원	1.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 2개 이하의 단순 늑골골절 3.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응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흥골 골절 6. 추간판 탈출증 7. 흉쇄관절 탈구 8.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0.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수지관절 탈구 12. 슬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명기되지 않은 견열골절 등 제불완전골절 16.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수족지 신전건 1개의 파열로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8. 사지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9.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0.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0급	200만원	1. 3cm 이상 안면부 열상 2. 안검과 누소관 열상으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3. 각막, 공막 등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4. 견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6. 수족지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하지 3대 관절의 열관절증 8.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1급	160만원	1. 뇌진탕 2.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3.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2급	120만원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2. 3cm 미만 안면부 열상

상해 급별	한도금액	상 해 내 용
		3. 척추 염좌 4. 사지 관절의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 5. 사지의 열상으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6. 사지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3급	80만원	1. 결막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 단순 고막 파열 3. 흉부 타박상으로 늑골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4급	50만원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 수족지 관절 염좌 3. 사지의 단순 타박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 영역별 세부지침

영 역	내 용
공 통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이하 "병급"이라 한다). 나.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상해 등급별 금액을 배상하되 그 합산액이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다. 1개의 상해에서 2개 이상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의 요인이 있을 때 등급상향 또는 하향 조정은 1회만 큰 폭의 조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향 조정요인과 하향 조정요인이 여러 개가 함께 있을 때는 큰 폭의 상향 또는 큰폭의 하향 조정요인을 각각 선택하여 함께 반영한다. 라. 재해 발생 시만 13세 미만일 때 소아로 인정한다. 마.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피판술, 유경 피판술, 원거리 피판술, 국소피판술이나 피부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안면부는 1등급 상위등급을 적용하고 수부, 족부에 국한된 손상에 대하여는 한 등급 아래의 등급을 적용한다.
두부	7. 뇌손상이란 국소성 뇌손상인 외상성 두개강안의 출혈(경막상·하 출혈, 뇌실 내 및 뇌실질 내 출혈, 거미막하 출혈 등을 말한다) 또는 경막하 수 활액낭종, 거미막 낭종, 두개골 골절(두개 기저부 골절 포함한다) 등과 미만성 축삭손상을 포함한 뇌좌상을 말한다. 나. 4급 이하에서 의식 이외에 뇌신경 손상이나(국소)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한 등급 상향조정 가능하다. 다. 신경학적 증상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Glasgow coma scale)로 구분하며, 고도는 8점 이하, 중등도는 9~12점, 경도는 13~15점을 말한다.라. 글라스고우 혼수척도는 진정치료 전에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마. 글라스고우 혼수척도 평가 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관지 삽관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바. 의무기록 상 의식상태가 혼수(coma)와 반혼수(semicoma)는 고도, 혼미(stupor)는 중등도, 기면(drowsy)은 경도로 본다.사.두피 좌상, 열창은 14급으로 본다.아.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6급 2호를 적용한다.자. 외상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다른 진단이 전혀 없이 단독 상병으로 외상후 1개월 이내 발병된 경우만 적용한다.
흉·복부	심장타박(6급)의 경우, ①심전도에서 Tachyarrythmia 또는 ST변화 또는 부정맥, ②심초음파에서 심낭액증가소견이 있거나 심장벽운동저하, ③심 장효소치증가(CPK-MB, and Troponin T) 세가지 요구 충족 시 인정한다.
척추 	가. 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3 이하인 경우이며, 불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4인 경우로 정한다. 나.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 화된 경우는 9급으로 본다. 다. 척주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근증 이나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9급

9	병역	내 용
		으로 본다. 라. 마미증후군은 척수손상으로 본다.
상. 하지	동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내용 중 사지 골절에서 별도로 상해 등급이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골절은 해당 등급에서 2급 낮은 등급을 적용하며, 도수 정복 및 경피적 핀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서 1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나.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 거스틸로 2형 이상(개방창의 길이가 1cm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만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다.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이라고 명기되지 않은 각 등급 손상 내용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를 말하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두 등급 하향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양측 또는 단측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병합하지 않으나, 별도 규정이 없는 양측 손상인 경우에는 병합한다. 마. 골절에 주요 말초신경의 손상 동반시 해당 골절보다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사. 아절단은 완전 절단에 준한다. 바. 재접합술을 시행한 절단소실의 경우 해당부위의 절단보다 2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사. 아절단은 완전 절단에 준한다. 아. 관절 이단의 경우 상위부 절단으로 본다. 자. 골절 치료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할 경우 해당부위의 골절과 동일한 등급으로 본다. 차. 사지 근 또는 건의 부분 파열로 보존적으로 치료한 경우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12급)로 본다. 카. 사지 관절의 인공관절 재치환시 해당 부위 골절보다 1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타. 보존적으로 치료한 사지 주요관절 골절 및 탈구는 해당관절의 골절 및 탈구보다 3등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파. 수술을 시행한 사지 주요 관절 탈구는 해당 관절의 보존적으로 치료한 달구보다 2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파. 수술을 시행한 사지 주요 관절 탈구는 해당 관절의 보존적으로 치료한 달구보다 2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파. 수술을 시행한사지 주요 관절 탈구는 해당 관절의 보존적으로 치료한 달구보다 2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하. 동일 관절 혹은 동일 골의 손상은 병합하지 않으며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가. 분쇄 골절을 형성하는 골절선은 선상 골절이 아닌 골절선으로 판단한다. 너. 수족지 절단 시 절단부위에 따른 차이는 두지 않는다.
	상지	기. 상부관절순 파열은 외상성 파열만 인정한다. 나. 회전근개 파열 개수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다. 근, 건, 인대 파열이라 함은 완전 파열을 의미하며, 부분 파열은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완전 파열로 본다. 라. 사지골 골절 중 불명확한 상해등급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지골 골절(견열골절을 포함한다)은 제불완전골절에 준용한다. 다만,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경우는 해당 부위 골절 항에 적용한다. 마. 사지골 골절 시 시행한 외고정술도 수술을 한 것으로 본다. 바. 소아의 경우, 성인의 동일 부위 골절보다 1급 낮게 적용한다. 다만, 성장판 손상이 동반된 경우와 연부조직 손상은 성인과 동일한 등급을 적용한다.

영 역	내 용
	사. 6급의 견관절 탈구에서 재발성 탈구를 초래할 수 있는 해부학적 병변이 병발된 경우는 수술 여부에 상관없이 6급을 적용한다. 아. 견봉 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 쇄골간 인대 파열은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에 포함되고,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로 수술한 경우 7급을 적용하며, 부분 파열로 보존 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9급을 적용하고, 단순 염좌의 경우 12급을 적용한다. 자. 주요 동맥 또는 정맥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의 경우,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이란 수술을 통한 열행의 확보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다발성 혈관 손상이란 2부위 이상의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을 의미한다.
하지	 가. 양측 치골지 골절, 치골 상하지 골절 등에서는 병급하지 않는다. 나. 천골 골절, 미골 골절도 골반골 골절로 준용한다. 다.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은 전후방 십자인대의 동시 파열이 별도로규정되어 있으므로 병급하지 않으나 내외측 측부인대 동시 파열, 십자인대와 측부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은 병급한다. 라. 후경골건 및 전경골건 파열은 족관절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의 등급으로 본다. 마. 대퇴골 또는 경비골의 견열성 골절의 경우, 동일 관절의 인대 손상에 대해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인대 손상 등급으로 본다. 바. 경골 후과의 단독 골절 시 족관절 내과 또는 외과의 골절로 본다. 사. 고관절이란 대퇴골두와 골반골의 비구를 포함하며, 골절 탈구란 골절과 동시에 관절의 탈구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아. 불안정성 골반 골절은 골반환을 이루는 골간의 골절 탈구를 포함한다. 자. 하지의 3대 관절이란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을 말한다. 차.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은 인대 복사. 고관절이란 대퇴골두와 골반골의 비구를 포함하며, 골절 탈구란 골절과 동시에 관절의 탈구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원수술을 시행하거나 완전 파열에 준하는 파열에 적용한다. 카.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의 수술을 시행한 골절은 치골 골절로 수술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

후유장애의 구분과 보험금 등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3조제1항제3호관련)

ZHOU			
장애 급별	한도금액	신 체 장 해 내 용	비고
1급	1억5천만원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 신체장애가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 등급보다 한급 높이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 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
2급	1억3500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 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한 엄지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 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된 것"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1 이상을 잃거나 중수기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
3급	1억2천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 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 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 란발가락의 전부를 잃 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 게된 것"이란 엄지 발 가락에 있어서는 끝관 절의 2분의1 이상을,
4급	1억5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 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 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 서는 끝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 관절 또는 제1지관절 (엄지발가락에 있어서

장애 급별	한도금액	신 체 장 해 내 용	비교
		함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 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하였어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
5급	9,000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 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 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등은 가능하나그외의 일을 다른사람에게 의존하여야하는
6世	7,5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에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못쓰게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못쓰게된 사람 8.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 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지의 말한다.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 보호를 받아야하는기 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한다. 11.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이상을 상실한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 기능의 2분의1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1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
7급	6,000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 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한 장애가 남아 특별 이 손쉬운 노무외에 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장애 급별	한도금액	신 체 장 해 내 용	비교
		못하게 된 사람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수위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위 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족근중족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에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에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 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정도만 남아 평생동안 특별히 쉬운 일외에는 노동을 말한다. 나경계등의 기능에 장애가 남다 가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이는 모든 정신기능에 장애로 종사알수 있는 작동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작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신체적 보고 경우의 되었지 되었지 되었다.
8급	4500만원	1.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주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 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 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이 인정되는 경우 나. 전간(癲癎)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 능성이 의학적·타각 적(他角笛)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사지에 경도(輕度) 의 단마비(單痲痹) 가 인정되는 사람 이 뚜렷한 장애가 남 아 특별히 손쉬운 노 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 능력이 일반인의 4분 의 1 정도만 남은 경 우를 말한다.
9급	3,8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	두글 글린덕. 15. "흉복부 장기의 기능 에 장애가 남아 손쉬 운 노무 외에는 종사

장애 급별	한도금액	신 체 장 해 내 용	ا ت
		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된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된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3개의 손가락을 모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된 사람 12.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산가락을 제대로 못쓰게된 사람 15.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된 사람 16. 항목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나라 나라 나라 사람	할 수 없는 것"이란 중등도(中等度)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 로 노동능력이 일반 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 에 장애가 남아 노무 가 상당한 정도로 제 한된 것"이란 중등도 의 흉복부 장기의 장 애로 취업가능한 적 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 를 말한다.
10급	2,700만원	1.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	

장애 급별	한도금액	신 체 장 해 내 용	비고
		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사람 11.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사람	
11급	2,300만원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소이 남은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된 사람 6.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된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된 사람 10.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12급	1,900만원	1. 한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 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	

장애 급별	한도금액	신 체 장 해 내 용	비교
		애가 남은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둘째발 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된 사람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13급	1,500만원	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사람 5. 한 손의 서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마디뼈의 일 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사람 또는가운데 발가락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사람	
14급	1,000만원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3.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된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장애 급별	한도금액	신 체 장 해 내 용	비고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비고

-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가락뼈사이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몸쪽 가락뼈사이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손 허리손가락관절(중수지관절) 또는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 는 가락뼈사이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발허리발가락관절(중족지관절) 또는 몸쪽 가락뼈사이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가락뼈사이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맨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 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정한다.

- 11.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 1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 1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 나. 전간(癲癎)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 다. 팔다리에 경도(輕度)의 단마비(單痲痺)가 인정되는 사람
- 1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수 없는 것"이란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 1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중등도(中等度)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 등도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특별약관 목차

원데이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제1장 대인배상 I 지원금 특별약관	93
제2장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	94
제3장 법률비용지원 특별약관	96
제4장 신용카드이용 보험료 납입 특별약관	100
제5장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100
※ 관련법규	104

특별약관 색인 목차

구분	특약명	페이지
٦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	94
_	대인배상ㅣ지원금 특별약관	93
Н	법률비용지원 특별약관	96
	신용카드 이용 보험료 납입 특별약관	100
Τ.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100

원데이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제1장 대인배상 | 지원금 특별약관

제1조(보상 내용)

-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배상책임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배상책임에서 정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 중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집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② 회사는 위 제1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피보험자동차의 의무보험이 가입된 보험자(공제를 포함합니다)가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 여 대인배상 I 에서 담보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에 의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의무보험이 가입된 보험자에게 실제 지급금액을 보 전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다음의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며, 그 한도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액수로 합니다.

- ①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단,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동 금액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긴급조치 비용
 - 2.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3. 기타 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된 비용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 이나 공제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2장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 ①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배상책임(대인배상)」이 체결되고 본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동차는 승용자동차, 경·3종승합자동차, 경·4종화물 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에 긴급출동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회사에 요청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제3조(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되는 긴급출동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긴급견인 서비스

사고 또는 고장으로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으로 운행하지 못하여 수리를 위해 긴급견인을 필요로 할 경우에 1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10km 초과거리는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차량의 구조 변경 또는 적재물 탑재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2. 배터리충전 서비스
 - 배터리의 방전으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드립니다. 단, 배터리 교환 시는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3. 예비타이어교체 서비스

타이어의 평크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예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장난 타이어를 예비타이어로 교체하여 드립니다. 다만, 차량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 탑재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4. 긴급구난 서비스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여 구난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긴급구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별도의 구 난장비 없이 구난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료를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유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라 함은 ① 2.5t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자동 차로 구난한 경우 ② 2대 이상의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구난한 경우 ③ 구난작업을 시작하여 견인고리 연결직전까지 소요된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한 경우 ④ 세이프티 로 더로 구난한 경우를 말합니다.

5. 타이어 펑크수리 서비스

- 가. 타이어트레드 부분(접지면)에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구멍이 뚫린 단순평 크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타이어평크를 수리 하여 드립니다. 다만, 자연 마모로 인한 평크 또는 타이어가 찢어진 경우 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나. 위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타이어평크 수리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 제1호의 긴급견인서비스나 제4호의 타이어교체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 1) 야간,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경우 등 평크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2) Run-flat형 타이어, 튜브형 타이어 등의 평크와 같이 평크 수리 시 특수 장비가 필요한 경우
 - 3) 타이어의 측면에 구멍이 뚫린 경우
 - 4) 기타 현장에서 타이어펑크 수리가 곤란한 경우
- 다. 펑크 1개 부위를 초과하여 수리하는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 담으로 합니다.
- ② 견인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제주도 및 연륙도로 연결된 도서지역제외) 의 경우 위 제1항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③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해당 긴급출동서비 스 비용 상당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는 이용상당 금액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④ 회사는 긴급출동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된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4조(피보험자동차의 범위)

-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동차는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 소유자인 타인으로부터 운전을 허락받은 타인차량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지정된 1대의 자 동차를 말합니다.
- 1. 자가용 승용자동차(10인승 이하), 자가용 승합자동차(16인승 이하), 자가용 화

물자동차(1톤 이하) 및 영업용 장기렌터카(1년 이상 대여한 경우)

- 2. 운전자 본인 소유가 아닌 자동차(리스차량은 리스이용자가 소유한 자동차로 간 주하고, 장기렌터카는 임차인이 소유한 자동차로 간주합니다)
-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관련법규*4)에서 정한 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

제5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6조(서비스 횟수)

피보험자가 이 특약에 가입 후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횟수는 총 1회 입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자동종료)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종료됨과 동시에 특별약관도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① 보험약관 보통약관 「배상책임(대인배상)」이 종료된 때
- ② 이 특별약관 제6조(서비스 횟수)에 의거 긴급출동 서비스 횟수를 모두 제공한 때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3장 법률비용지원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거나 「형법」 (관련법규*13)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관련법규*14)의 중상해를 입혀 발생된 손해에 대해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중상해 란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한도)

-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사고마다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형사합의금
- 1. 다음 각 목 에 해당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아래 표 "형사합의금 보상 한도액"의 상해급수별 보상 한도액 내에서 피보험자가 형 사합의금 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단, 가 내지 다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합 니다.)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실제 공탁금액을 보상 한도액 내에서 지급하고, 향후 피보험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형사합의금을 반 환하여야 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사망케 한 경우
- 나. 피보험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2항^(관련법규*14)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켜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 다.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형법」 (관련법규*13)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 조 제1항 제2호(관련법규*14)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용어풀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련법규*14)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는 1. 신호 지시위반 사고 2. 중앙선침범사고 3. 속도위반사고 4. 추월방법위반사고 5. 건널목통과방법위 반사고 6. 횡단보도사고 9. 인도침범사고 10. 개문발차사고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운전의무위반사고 12. 화물고정의무위반사고가 해당되며, 7. 무면허사고, 8. 주취 약물복용사고는 제외 됩니다.

- 2.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가.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 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 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 나.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 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형사합의금 보상 한도액]

구분	사망	상해 등급 1급 내지 3급	상해 등급 4급, 5급	상해 등급 6급, 7급	상해등급 8등급내지14급
실속형	3,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300만원	보상하지않음
고급형(확대)	3000만원	3000만원	500만원	500만원	100만원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② 방어비용

피보험자가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합니다.)을 죽게 하거나다치게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보상 한도액 내에서 실제 발생 한 변호사비용 등 방어비용을 가입금액 한도에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약식기소 제외) 다만,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관련법규*15)에 따라서 법원에서 공판 절차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또는 동법 제453조(관련법규*15)에 따라서 정식재판이 청구되는 경우는 보상 한도액 내에서방어비용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벌금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벌금을 2천만 원 한도로 지급.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법규*30) 제5조의13에 의한 경우, 3 천만 원 한도로 지급

④ 한 사고로 위 제1항 내지 제3항의 보험금을 두 가지 이상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제3조(피보험자동차의 범위)

-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동차는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 소유자인 타인으로부터 운전을 허락받은 타인차량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지정된 1대의 자 동차를 말합니다.
- 1. 자가용 승용자동차(10인승 이하), 자가용 승합자동차(16인승 이하), 자가용 화물자동차(1톤 이하) 및 영업용 장기렌터카(1년 이상 대여한 경우)
- 운전자 본인 소유가 아닌 자동차(리스차량은 리스이용자가 소유한 자동차로 간 주하고, 장기렌터카는 임차인이 소유한 자동차로 간주합니다)
-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관련법규*4)에서 정한 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
- 4. 「법인세법시행령」제50조의2^(관련법규*11) 또는「소득세법시행령」제78조의3^(관련법 규*10)에서 정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 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단,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 취급업자로서 업무상 위탁 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관련법규 *4) *10) *11) *15) *30) → p100 자동차보험 약관관련 법규 참조

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싸움으로 인한 손해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 3.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 5.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6.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에 생긴 손해
- 7.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범죄의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 해
- 8. 피보험자가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하던 중 생 긴 사고로 인한 손해
- 9.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10.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단,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 시험용은 제외) 또는 경기용으로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11.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운전을 허락받지 않은 경우 또는 장기렌터카의 임차인으로부터 운전을 허락받지 않은 경우
- 12. 피보험자동차가 기명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리스차량은 리스이용자가 소유한 자동차로 간주하고, 장기렌터카는 임차인이 소유한 자동차로 간주합니다)에 해당되는 경우
- ② 회사는 피해자가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분담)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의 보험자(공제를 포함합니다)가 이 보 험의 배상책임에서 담보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의 보험자에게 실제 지급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전 하여 드립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장 신용카드이용 보험료 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시'라 합니다)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제3조(사고카드 계약)

- ①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② 위 제1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5장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가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 나. 화재 또는 폭발
-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용어풀이】

'상해'라 함은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피보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기명피보험자
- 2. 제1호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제1조(용어정의) 제15호)
- 3. 피보험자동차의 보유자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 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 3.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 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 5.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 7.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 합니다.
- 가.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 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 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나.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실제의 출·퇴근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 서 승용차 함께타기를 실시한 경우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

- ①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다음 과 같이 계산합니다.
- 1. '실제손해액'은 '<별표 1> 대인배상,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 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 하여 드립니다.
 -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합니다)
 - 나. 다른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3. 위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대인배상 I (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 및 대인배상 II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단,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 다.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 라.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 받은 금 액
 - 마. 피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② 위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과 대인배상에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이 약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에 및 대인배상에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한 액수로 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배상의무자'라 함은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원데이 자동차보험 약관관련 법규

(*1)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 19. "워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 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 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4조(사고발생 시 조치) 제1항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 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 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0조(운전면허)

-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 · 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시·도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1. 제1종 운전면허
 - 가. 대형면허
 - 나. 보통면허
 - 다. 소형면허
 - 라. 특수면허
 - 1) 대형견인차면허
 - 2) 소형견인차면허
 - 3) 구난차면허
 - 2. 제2종 운전면허
 - 가. 보통면허
 - 나. 소형면허
 - 다. 워동기장치자전거면허
 - 3. 연습운전면허
 - 가. 제1종 보통연습면허
 - 나. 제2종 보통연습면허
- ③ 시 · 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유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 시 · 도경찰청장은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새로 붙이거나 바꿀 수 있다.

제148조(벌칙)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8조의2(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이하 생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인명보호장구)

- ①"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 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 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 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 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 ② 법 제50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란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

(*2) 뉴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정의)

- 1.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 나.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 다. 농림축산물 생산시설의 환경 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 · 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 라.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농림축산물을 보관, 수송 및 판매하는 산업은 제 외한다)에 사용되는 기계 · 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농업기계의 범위)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농업기계의 범위(제1조의 2관련)

농업기계명	범위
1. 농업용 트랙터	경운, 정지 및 운반 등의 농작업수행을 주목적으로 설계되어 동력 취출장치, 견인장치, 승강장치 등의 작업기를 장착하고, 구동장치 를 갖춘 차축이 2개 이상인 자주식(自走式) 원동기계
2. 농업용 트랙터 보호 구조물(ROPS)	농업용 트랙터에 장착된 캡 또는 프레임 형식의 운전자 보호장치
3. 콤바인	예취(베기)장치, 탈곡장치, 정선(精選)장치 및 배출장치 등을 갖추고 벼, 보리, 콩, 잡곡 등의 농작물을 베는 동시에 탈곡하고 정선(精選)할 수 있는 자주식 농작물 수확기계
4. 이앙기	주행장치, 모탑재장치 및 식부(모심기)장치 등을 갖추고 벼의 모를 논에 옮겨 심는 자주식 기계[부분경운형 및 멀칭(비닐덮기)겸용형 을 포함한다]
5. 정식기	식부장치, 모공급장치, 복토(흙덮기)나 진압장치(필요한 경우에만 갖출 수 있다) 등을 갖추고 벼 외의 배추, 고추, 양파, 고구마 및 양 상추 등의 어린모를 농경지에 옮겨 심는 자주식 기계(농업용트랙 터 장착식을 포함한다)
6. 농업용 난방기	고체연료, 유류, 전기 등 유해가스 발생 우려가 적은 에너지원을 열 원으로 하여 농업용 시설을 난방하는 기계로서 연소가스가 시설 내로 유입되지 않는 구조를 가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난방기(전기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난방기는 전기안전성적서 또 는 전기안전 인증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가. 온풍식: 정격난방능력 210MJ/h 이상(전기식은 전기발열체의 소비전력이 10kW 초과)인 송풍기 일체식 구조로 천장, 기둥, 바닥 에 설치할 수 있는 난방기계 나. 온수식: 정격난방능력 210 MJ/h 이상(전기식은 전기발열체의

	소비전력이 10kW를 초과)이고, 온수를 연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의 난방기계다. 온풍·온수 겸용식: 정격난방능력 210 MJ/h 이상(전기식은 전기발열체의 소비전력이 10kW를 초과)이고, 온풍·온수식 난방을 각각 독립적 또는 동시에 가동할 수 있는 구조의 난방기계라. 방열형: 발열체 소비전력 10kW 이하로 천장·기둥·바닥 설치식구조를 가진 방열형 난방기로서 난방 온도 및 ON/OFF를 제어할수 있는 난방기계(발열체로부터의 화재 또는 화상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공인기관의 전기안전성 인증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7. 농산물건조기	농산물(곡물 및 유채는 제외한다) 건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계 (냉장겸용식을 포함한다)		
8. 농산물 저온저장고	농산물을 보관·저장하는 목적으로 설계된 저장용적 50㎡ 이하(바 닥면적 10.56㎡ 이하)로서 이동할 수 있는 저온저장기계		
9. 가정용 도정기	농가 단위에서 벼를 투입하여 현미 또는 백미를 가공하는 소요동 력 1kW 이상 10kW 이하인 가정용 현미기, 정미기 또는 복합식 도 정기계		
10. 농업용 동력 운반 차	최대출력 18kW 이하의 농업용엔진 또는 농업용전동기, 적재함과 주행장치 등을 갖추고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자주식 운반차(배기량 50cc 미만의 가솔린엔진으로 사용되거나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전동기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가. 승용형 1) 최고주행속도: 30km/h 이하 2) 적재정량: 200kg 이상 1000kg 이하 3) 적재설비 바닥면적: 1.0㎡ 이상나. 보행형 1) 최고주행속도: 7km/h 이하 2) 적재정량: 80kg 이상 500kg 이하 3) 적재설비 바닥면적: 0.5㎡ 이상다. 자율주행형 1) 최고주행속도: 30km/h 이하 2) 적재정량: 80kg 이상 500kg 이하 3) 적재설비 바닥면적: 0.5㎡ 이상다. 자율주행형		
11. 농업용 로더 (loader, 올리개)	농작업에 사용되는 자체중량 2톤 미만의 자주식 로더[차체굴절식 조향장치(방향조절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의 타이어식 로 더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용 트랙터에 버킷(흙 등을 퍼 올리는 통) 을 장착하여 로더작업을 수행하는 작업기		

:	
12. 농업용 굴착기	농작업에 사용되는 자체중량 1톤 미만의 자주식 굴착기 또는 농업 용트랙터 등에 버킷을 장착하여 굴삭작업을 수행하는 부속작업기
13. 관리기	고랑·두둑 성형(두둑만들기), 중경(中耕, 사이갈이), 제초, 시비(거름주기), 방제, 파종, 비닐피복(비닐덮기) 등의 다양한 작업기를 부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2이하의 특정 작업 전용형은 제외한다)가. 승용형: 작물 손상 방지를 위하여 최저 지상고가 전륜과 후륜의 중심보다 높게 설계된 구조로 최저지상고는 400mm 이상이고 협폭 타이어가 장착된 최고주행속도 15km/h 이하의 자주식 승용형 원동기계나. 보행형: 고랑·두둑 성형, 중경, 제초, 시비(거름주기), 방제, 파종, 비닐피복 등의 작업기를 부착하여 핸들 위치를 전·후로 전환하여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구조로 탑재원동기 최대출력 9kW 미만, 최고주행속도 7 km/h 이하인 자주식 보행형 원동기계
14. 비료살포기	퇴비, 분말비료, 입상비료 또는 액상비료를 농경지에 살포하기 위하여 적재장치, 반송장치, 살포장치 등을 갖춘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가. 자주식: 동력전달 차축을 가진 보행자주식 또는 승용자주식비료살포기계(자율주행형 비료살포기계를 포함한다)나. 장착식: 농업용 트랙터, 동력경운기 등에 장착되거나 연결·견인되도록 설계된 비료살포기계
15. 곡물건조기	곡물의 건조를 균일하게 하기 위한 순환장치 또는 교반장치를 갖춘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곡물 또는 유채 건조기계가. 열풍형 건조기(원적외선 건조기는 포함하고, 연속식 건조기는 제외한다)나. 상온 통풍저장형 건조기
16. 농업용 고소작업 차(과수용 작업대를 포함한다)	
17. 농업용 방제기	병해충 방제(防除), 제초 등을 목적으로 설계된 것으로서 약액탱크, 농약살포장치 및 송풍장치(원거리용 방제기, 스피드스프레이어만 해당한다) 등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가. 주행형 동력분무기: 약액탱크, 펌프 및 노즐 등을 갖추고 권취

	(호스를 자동으로 감는 장치), 긴막대 등의 장치로 농작물에 농약을 살포하는 기계(자주식은 최고주행속도가 승용형의 경우 20km/h 이하, 보행형은 7km/h 이하일 것) 또는 농업용트랙터 등의 부착식 작업기(농업용 엔진 등의 동력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한다)나. 원거리용 방제기: 약액탱크, 펌프, 송풍팬, 송풍관 및 노즐 등을 갖추고 논이나 밭 등에서 20 m 이상 원거리로 약액을 살포하는 승용자주식 기계(최고주행속도 20km/h 이하일 것) 또는 장착식작업기다. 살분무기: 농업용엔진, 펌프 및 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연무형태 액체) 발생장치 등을 갖추고 액제나 분제 등의 농약을 평균입경 30~50μm 범위로 미립화시켜 살포하는 기계라. 스피드스프레이어: 약액탱크, 펌프, 송풍팬 및 노즐 등을 갖추고 평균입경 30~50μm 범위로 약액을 미립화시켜 150°이상의 범위로 살포하는 자주식(최고주행속도는 승용형의 경우 20km/h이하, 보행형은 7km/h 이하일 것) 또는 농업용 트랙터 장착식 작업기마. 토양소독기: 약액탱크, 펌프 및 주입장치 등을 갖추고 토양에 직접 약액을 주입하는 자주식기계바. 시설용 분무기: 온실 내에서 농작물의 병해충 방제를 위해 레일 등 고정경로를 따라 이동하거나 정치상태(장치가 고정 설치된상태를 말한다)에서 액제를 살포하는 기계사. 해충방제기: 포집장치 또는 살충장치 등을 갖추고 농작물에 유해한 해충의 포집 또는 살충 방제하는 기계
	아. 연무기: 연소부와 고압분사장치 등을 갖추거나 연무용 노즐과 송풍기 등을 갖추고 약제를 평균입경 20 μ m 정도로 미립화시켜 입 자를 부유 분산살포 하는 기계
18. 농업용 파쇄기	절삭 또는 파쇄장치 등을 갖추고 폐목재, 잔가지, 벌채 후 부산물, 사료작물 등을 절삭 또는 파쇄하는 자주식, 정치식 또는 농업용 트 랙터 장착식 기계
19. 농업용 톱밥제조 기	목재 등을 절삭하여 톱밥을 만드는 자주식 톱밥제조기 또는 농업 용 트랙터 장착식 기계
20. 농산물세척기	공급장치, 세척장치 및 배출장치를 갖추고 채소류 및 과실류 등을 세척하는 기계
21. 예취기	주행장치, 예취장치 등을 갖추고 벼, 두류, 참깨 등의 농작물을 베 어 수확하는 기계
22. 동력제초기[모우	주행장치 및 제초장치를 갖추고 잡초를 자르는 용도에 사용되는

어(mower, 잔디깍는 기계)를 포함한다]	승용자주형, 보행형 또는 부착형 방식의 제초기계	
23. 농업용 리프트	평탄한 장소에서 작업자가 선반이나 작업대 등에 탑승하지 않고 농산물이나 농자재 등을 이동시키거나 상하차 등의 작업을 수행하 는 자주식 또는 트랙터 부착식 리프트(농산물 상하차운송기)	
24. 트레일러	농업용 트랙터, 동력경운기 등에 장착하여 농산물이나 농업기계 등을 운반하는 적재장치(곡물적재용을 포함한다)	
	볏짚 또는 목초 등을 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압축하여 묶어주는 자주식 베일러 또는 농업용 트랙터 장착식 베일러(베일피복기 겸용형을 포함한다)	
26. 농산물 결속기(結 束機)	파, 마늘, 부추 등의 농산물을 부피, 크기 또는 중량별로 끈이나 접 착용 자재 등을 사용하여 묶는 기계	
27. 농업용 절단기	농산물과 농산부산물의 줄기절단, 파쇄, 세절(잘게 자름)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가. 농산물 세절기: 감, 약초 등 임산물과 마늘, 양파 등 농산물을 세절하는데 사용되는 기계나. 덩굴파쇄기: 고구마 등의 덩굴을 절단·파쇄하는 기계(자주식도는 농업용 트랙터 등의 장착식을 포함한다)다. 농산물 절단기: 마늘, 양파 등의 줄기를 절단하는 기계(자주식도는 농업용 트랙터 등의 장착식을 포함한다)라. 잔가지 파쇄기: 절단된 과수 등의 잔가지를 절단·파쇄하는 기계(자주식도는 농업용 트랙터 등의 장착식을 포함한다)라. 사료작물 절단기: 가축의 사료용으로 사용할 목초, 결속볏짚 및 옥수수대 등을 세절 또는 파쇄하는 기계(자주식 또는 농업용 트랙터 등의 장착식과 농업용 전동기의 동력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28. 베일피복기	볏짚 또는 목초 등을 압축하여 묶어 놓은 베일을 스트레치 필름 등 으로 감아서 밀봉하는 기계(자주식 또는 농업용 트랙터 장착식 베 일피복기를 포함한다)	
29. 동력수확기	땅속작물, 엽채류, 과실류, 사료작물 등을 굴취(캐냄), 인발(뽑아냄), 절단 및 탈실(열매 떼어내기) 등의 방법으로 수확 또는 수집하는 기계(벼 등 곡물 콤바인은 제외한다)가. 땅속작물수확기: 각종 땅속작물(감자, 고구마, 마늘, 양파, 인삼 등)을 수확하기 위한 굴취기 또는 굴취 후 토사 등을 분리한 후용기에 수집하는 기계	

	나. 엽채류수확기: 부추, 시금치, 배추 등 엽채류를 베어 수확하거나 수확한 엽채류를 수집하는 기계다. 과실수확기: 고추, 토마토, 딸기, 사과, 배, 감, 매실 등의 과실을 줄기로부터 분리하거나 분리된 과실을 수집하는 기계라. 사료작물수확기: 목초, 호밀 또는 옥수수 등의 사료작물을 베는 동시에 절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확하는 기계
30. 경운기	경운, 정지 및 운반 등의 농작업기를 부착할 수 있는 동력취출장치 및 견인장치 등을 갖추고 최저 지상고가 150 mm 이상으로 습답 (물논)에서의 작업이 용이한 구조의 자주식 보행형 원동기계(특수 한 목적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
31. 사료배합기	배합통, 교반장치 등을 갖추고 조사료, 농후사료, 발효사료, 화식 사료 등을 배합하는 기계(자주식, 농업용 트랙터 장착식 또는 정치 식을 포함한다)
32. 동력파종기	종자통, 종자배출장치 및 복토장치(필요한 경우에만 갖출 수 있다) 등을 갖추고 보리, 콩, 마늘, 감자, 옥수수 등의 종자 및 볍씨를 직 접 농경지에 파종하는 기계(자주식 또는 농업용 트랙터 등의 장착 식을 포함한다)
33. 사료공급기(사료 급이기)	사료적재함, 사료배출장치 등을 갖추고 가축에게 조사료, 농후사 료, 배합사료, 화식사료 등의 사료를 공급하는 자주식 또는 정치식 사료급이기계
34. 농산물제피기	공급장치, 제피장치 등을 갖추고 농산물의 껍질을 자동으로 제거 하는 기계
35. 탈곡기	농작물의 투입장치 및 탈곡장치 등을 갖추고 예취된 벼, 보리, 콩, 옥수수, 잡곡 등을 탈곡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자주식 또는 농업 용 트랙터 등의 장착식 및 농업용 엔진 등의 동력을 이용하는 기계 도 포함한다)
36. 농산물선별기	미곡 외 과일, 구근(알뿌리), 채소 등의 농산물을 비중, 중량, 색, 당 도, 형상 등에 따라 선별하는 기계(휴대형 비파괴 과실류 측정장치 등도 포함한다)
37. 부속작업기	농업용 트랙터, 경운기, 관리기, 이앙기 등에 장착하거나 견인되어 사용되는 농작업 기계
38. 농업용 무인 항공 기	파종, 시비, 방제와 농작물 생육상태 예찰 등의 장비를 장착하여 농 산물 생산에 활용되는 무인헬기 및 멀티콥터

경조절장치	물 생산 환 농작물 및 가축 등의 생육환경을 자동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운 및 축사시설 등의 온습도, 풍향, 풍속 등의 자동제어 기자재	
40. 농산물포장기	수확 또는 가공한 농산물을 비닐, 종이, 박스 또는 병 등에 포장하는 기계	
41. 그 밖의 농업기계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업기계		

(*3)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1항

-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1의2. "원동기"란 자동차의 구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내연기관이나 전동기 등 동력발생장치를 말한다.
 - 1의3.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 1의4. "미완성자동차"란 차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구조·장 치를 갖춘 자동차로서 용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제작·조 립 공정이 필요한 자동차를 말한다.
 - 1의5. "단계제작자동차"란 미완성자동차를 이용하여 제2호에 따른 운행(용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이 가능하도록 단계별로 제작된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자동차의 종류)

-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 조종자동차
 -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

- 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 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 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 ①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 (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유행하지 못한다.
- ②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保護裝具)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이하 "자동차부품"이라 한다)는 안 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부품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 다.
- 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캠핑용자동차 안에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 가스설비, 배관시설 및 그 밖의 사용시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기설비 및 캠핑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④ 자동차안전기준과 부품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⑤ 자동차제작·조립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생산대수 이하로 제작·조립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수준의 안전도 확인방법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아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야 한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정의)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

- 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의2.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 동차를 말한다.
-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3.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 4. "운전자"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 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 (「도로교통법」제2조 제 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용어풀이]

- ① '자동차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 ② '책임보험'라 함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

- 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 ③ '책임·공제'라 함은 사업용 자동차의 보유자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제사업자"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한다.

제5조의 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

① 자동차보유자는 보유한 자동차(제5조 제3항 각 호의 자가 면허 등을 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해외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자동차의 등록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그 운행중지기간에 한하여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이 경우 자동차보유자는 해당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상법」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보험가입자 등은 보험회사등이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에게 보험금 등의 보상한도에서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보험 계약의 해제 등)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의무 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의 말소 등록(抹消登錄)을 한 경우
- 2.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5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자동차·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 3.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건설기

- 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 4. 해당 자동차가 제5조제4항의 자동차로 된 경우
- 5. 해당 자동차가 다른 의무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가입 계약을 해제 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
- 6. 해당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 7. 천재지변 · 교통사고 · 화재 · 도난,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책임보험금 등)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
 - 1. 사망한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 2.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
 -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손해액
- ② 동일한 사고로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할 둘 이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책임보험금을 지급한다.
 - 1. 부상한 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2.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산액
 - 3.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③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말한다.

(*5)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정의 등)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 ①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 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 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로 제3항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있다.
- 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발급, 적성검사의 기준, 그 밖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 1. 18세 미만인 사람
- 2. 건설기계 조종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 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3.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 4. 건설기계 조종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 품 또는 알코올중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5. 제28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같은 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처분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

건설기계의 범위(제2조관련)

거서기게대 #이		
건설기계명	범위	
1. 불도저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2. 굴착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 량 1톤 이상인 것	
3. 로더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다만, 자체굴절식 조항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	
	인 것은 제외한다.	
4. 지게차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	
	며,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 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5. 스크레이퍼	흙·모래의 굴착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적인 것	
6. 덤프트럭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 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7. 기중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제의 지주 및 선회장치 를 가진 것.	
. 10 1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	
8. 모터그레이더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9. 롤러	1. 조정석과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 피견인 진동식인 것	
10. 노상안정기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원 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12. 콘그리트피니셔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3. 콘그리트 살포기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4. 콘크리트 믹서트력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 하다.)
 크리트배송능력이 매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적재식인 것
대공급장치·건조가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공급 디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 인 것
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스팔트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대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기배출량이 매분당 2.83세제곱미터(매제곱센티미 당 7킬로그램 기준)이상의 이동식인 것
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동기를 가진 것으로 헤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톤 이상인 것
알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프식·바케식·딧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만, 『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 등록된 것은 제외 한
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 및 제27호에 따른 건설
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 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규모시 국도교당구 6년이 떠도 중에는 것. 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jib)를 선회시켜 중량
의 어머의 '' 이 가지한 '시트(ND)를 한의시기 '' '' '' '' '' '' '' '' '' '' '' '' ''
의 6에, 근무 또는 되무도 에 6에 달 있는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것
제외한다.

(*6)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 제3호 및 제10호

-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 자서명을 말한다.

-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 관리하고 있을 것
-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10. "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7)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 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제15조 제1항 제2호證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5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2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및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 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 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 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 활용에 대한 동의)

-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 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 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서면
 - 2.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 있는 것을 말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 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 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 ② ~ ③ (기재생략)
-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한다. 이 경우 필수적 동의사항은 서비스 제공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여야 하며, 선택적 동의사항은 정보 제공에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용정보주체에게 서비스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 ① 삭제 <2015. 9. 11.>
-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한다)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③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유무선 통신을 통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④ 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있는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동의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

(*9) 예금자보호법

보험회사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보험업법상의 보험계약이전제도에 의해 다른 회사로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만약 파산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천만원 한도 내에서 각종 환급금 및 보험금 지급을 보장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10)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1.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5.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제 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근로소득)

-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 사한 성질의 급여
 -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 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 3.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12) 통계법

제15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 ① 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거나 작성하고자 하는 기관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등을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요건은 통계작성 조직 및 예산, 통계작성계획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통계청장은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신청, 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한다.
 - 1.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
 - 2.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 3.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 4.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 5. 그 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통계청장이 인정하는 통계
- ② 통계청장은 지정통계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통계청장은 지정통계를 지정하거나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 시하여야 한다.
- ④ 지정통계 지정의 절차 및 방법과 제3항에 따른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

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제1항 제2호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 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15) 형사소송법

제450조(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 ②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수급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이하 생략)

제2조(정의)

11.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5조 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7)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하생략)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이하생략)

(*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 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 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된 법

(*19) 금유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조정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총족하는 분쟁사건(이하 "소액분쟁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36조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6조제3항에 따라 서면통지를 받거나 제36조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조정안을 제시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1.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사건일 것
- 2.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2천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 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수수료, 위약 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요구권의 행사요건, 행사범위 및 정당한 사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 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 하는 사람
 -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 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1)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정의)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제 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2항(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허가, 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충당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한다)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보유 차량으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범위에서 업종 변경을 위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는 경우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 업자가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그 차령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 동차로 충당하는 경우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었던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말소등록이 된 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 수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후 다시 등록하는 경우. 다만,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신규로 교체한 경우. 다만,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

거나 임대할 수 있는 경우 (제4호 및 제4호의2의 경우에는 유상운송으로 한정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로서 장애인 등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2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1항(차량충당조건)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신규등록, 증차 또는 대폐 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 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이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내여 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차량충당조건을 달리 할 수 있 다.

(*24)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 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 지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 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있다.
- 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25) 군수품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군수품"이란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물품 중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와 육군·해군·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동산은 제외한다.

- 1. 현금
- 2.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탁하여야 할 유가증권
- 3.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

(*26)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7)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2항

② 제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2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 ①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 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10조의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② 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1. 등록기준지
 - 2.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3. 출생 · 혼인 ·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 4.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국내거소 신고번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5. 그 밖에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29) 보험업법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 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 가 있는 자로 하여금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 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3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찾아보기(색인)

이 약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요한 용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고객의 편의를 돕기 위한 용어정의로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조항의 내용과 정의 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П

가족

- 1. 기명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부모의 사실혼관계 배우자 제외)
- 2. 기명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부모의 사실혼관계 배우자 제외)
- 3. 기명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 4.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사실혼관계 배우자의 자녀 제외)
- 5. 기명 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 계자녀(사실혼관계 배우자의 자녀제외)의 배우자

고의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발생할 결과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인용하는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를 말하며 일정한 결과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감히 행하는 "미필적 고의"를 포함함

공제계약

공제조합이 각각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출자금을 자본으로 조합원의 자동차사고 시에 공제금을 지급하여 돕는 "공제사업"에 의한 계약

교환가액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직전 피해물의 가액상당액 또는 사고 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

급여소득자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사람

기명 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

대차료

대차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마약 또는 약물 등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만 **세 미만의 자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 **세 미만의 사람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또는「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 거나 운전(조종)이 금지된 상황에서 운전(조종)하는 것을 포함

물체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엔진내부나 연료 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경우 물체로 보지 않음

Н

보통약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구체적인 보상내용 및 보험 계약의 성립에서 소멸까지의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권리와 의무사항 을 정한 내용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나, 특정의 사안(예: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전쟁, 지진, 태풍 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은 예외로 하여 그 의무를 면함

보험가액

- 1.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 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
- 2. 보험계약 체결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 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

보험가입금액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액(보 상 한도액)

보험금

자동차 사고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액

보험료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계약자가 지불하는 금액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1. 부모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 2. 배우자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 3. 자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배상의무자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 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

人

상지

견관절(어깨관절) 이하의 팔 부분

상해 등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의 구분과 보험금 등을 정한 등급

소지품

휴대품 이외에 소지한 물품으로 정착되어 있지 않고 휴대팔 수 있는 물품예)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CD플레이어, MP3, 워크맨,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 라디오, 핸드백, 서류 가방 및 골프채 등

실제 소해액

이 약관의 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 및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과실상계 및 보상 한도 미적용 기준)을 말함

0

안면부

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 부분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 이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조종)하거나 도로교통법에 의한 음주측정 불응행위를 말함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관련법규*5)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 하는 보험

이자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함

天

자기부담금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일정한도 이하의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부담하지않고 피보 험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

자동차 취급업자

자동차정비업,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

전부손해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이상인 경우

정부보장사업

뺑소니 또는 무보험사고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응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과 동일한 한도액까지 보장하는 제도

정차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

주차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 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大

친족

혈연관계에 있거나 혼인으로 맺어진 사람으로서 민법 제 777조에 규정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E

특별약관

자동차보험 가입시 선택해서 가입함으로써 보통약관에서 보장하는 내용에 추가로 보상 또는 비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내용

п

피보험자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는 각각의 보장종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ψ

하지

고관절(엉덩관절) 이하 대퇴부, 하퇴부, 족부를 의미하며 둔부, 서혜부, 복부 등은 제외

후유장애 등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후유장애의 구분과 보험금 등을 정 한 등급

휴대품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1. 금유서비스 이용 범위

- 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 만으로 이용됩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객 권리

가.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통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조회를 한 신용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때에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서면: 본사(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17 (인의동, 하나손해보험 빌딩)

- 전화: 1566-3000 - 인터넷: www.hanainsure.co.kr · [조회/신청]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등

개인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의 방식으로 동의한 경우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조회회사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는 철회할수 없습니다. 동의를 받은 금융회사 외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고객과 약정한 용역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고객이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 (수신자부담) 무료전화: 080-860-3300

- 무료전화 이외: 당사 콜센터(1566-3000),Do Not Call 센터(www.donotcall.or.kr), 방문(본사 주소 참조)
- 인터넷: www.hanainsure.co.kr · [신청]

라.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 조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청구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t청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 화	지역번호 없이 1566-3000/ 1644-3000/ 1644-2500	
신청방법	서 면	03137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17 (인의동, 하나손해보험 빌딩)	
	인터넷	www.hanainsure.co.kr	

마.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조회 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신용정보(주)/한국신용평가정보(주)/서울신용평가정보(주)/코리아크레딧뷰로(주)

3.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보상 규정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개인신용정보	손해보험협회 개인신용정보	금융감독원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	보호담당자	보호담당자
02) 6670-8032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17 (인의동, 하나손해보험 빌딩) 7층	02) 3702-8500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68 코리안리빌딩 6충	

예금자 보호 안내

- 1.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 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 호됩니다.(단, 보험계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 호하지 않습니다.)
- 2. 본 보험회사가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 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3.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를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지역 번호 없이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모집질서 신고센터 안내

- *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1332 • 인터넷:www.fss.or.kr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하나손해보험)
 - 전화: 1566-3000 인터넷: ww.hanainsure.co.kr